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8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8월 18일

3. 제안이유

'98. 2. 24일 대통령령 제15,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자치단체장 여비지급 기준 마련(안 제3조)
 - 도지사 : 특호 라목(차관급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)
-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(국외여비 제외)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
 -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국외여비규정을 삭제함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,680호로 제정공포('98. 2. 24) 되고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각각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자치단체장 여비 지급기준을 차관급 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하였고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(안)